수 강 신 청

❑ 수강신청 기본원칙

❍ 학생은 매 학기 18학점이내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하되,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.75이상인 경우 3학점까지 추가 수강신청 가능

※ 공학인증 컴퓨터공학과는 20학점, 토목공학과 2019입학생부터 21학점, 졸업학점이 130학점을 초과하는 학과는 21학점, 치의예과는 20학점, 치의학과는 23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

❍ 직전학기 수강가능학점 중 수강하지 못한 학점은 최대 3학점까지 다음 학기로 이월되어 추가 수강신청 가능(성적우수로 가산되거나 이월된 학점의 재이월은 불가함)

※ 직전학기 **학사경고자 및 규정학기 초과자**는 이월 불가

※ 특별학점은 학기 종료 후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되며, 최종 해당학기 수강가능학점을 초과할 수 있으나 다음 학기에 수강가능 학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학점을 신청하면 이월 학점이 없거나 줄어 들 수 있음

❍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음

❑ 교과목 재이수

❍ 재이수 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은 재이수 신청학기의 성적으로 인정되고, 이전에 취득한 학점과 성적은 무효 처리됨

❍ <u>2015학년도 입학생(편입생 포함)부터는 성적등급이</u> C+이하인 경우에만 재이수를 할 수 있으며, 재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B+이하로 함

❍ 2018학년도 입학생(편입생 포함)부터 재이수는 교과목당 1회만 가능(필수 교과목은 제외)

❍ 동일 교과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폐지된 교과목의 재이수는 교과목 개설학과의 유사대체과목을 지정받아 재이수 가능

❍ 계절학기의 수강과목은 2과목 이내로 하고, 수강학점은 매 계절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

※ 휴학생도 계절학기 6학점 수강가능(단, 이러닝과 OCU과목은 불가)

❑ 수강신청 변경

❍ 수강신청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. 다만, 지정된 기일 내 수강신청을 못한 자(복학생 포함)와 수강신청 강좌의 합반, 폐반, 분반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변경 할

수 있음

❍ 수강신청이 승인된 교과목을 출석하지 않을 경우, 그 교과목의 성적은 "F"학점이 됨

❑ 수강신청 취소

❍ 수강과목의 취소는 본인이 인트라넷에서 직접 취소할 수 있음

❍ 수강신청 취소는 수업일수 1/4선 이내로 함(학사일정표 참조)

❑ 폐강

❍ 교양(교직, 일선)과목은 수강인원이 25명 미만일 때는 폐강함

❍ 전공과목은 수강인원이 12명 미만일 때에는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.(다만 해당학년 재학생이 30명 미만인 학과는 수강 신청인원이 재학생의 3분의 1미만일 때 폐강함 음악.미술.공예조형디자인학과 전공실기와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과교육영역은 제외)

❍ 계절학기 개설과목은 **등록인원 20명 미만일 때 폐강**함

❑ 휴·결강과 보강

❍ 학사력에 계획이 없는 휴강 또는 교과목 담당 교수의 사정에 의한 결강시 단과대 학장에게 "휴.결강 및 보강 계획서"를 사전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, 당해학기에 반드시 보강하여야 함

❍ 대학장은 휴.결강 및 보강계획서에 의한 보강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

❑ 수강신청 안내사항

❍ 재학생 수강신청 가능학점

① 졸업학점 130 학과

- 2014년전(前) 입학생: 20학점 수강가능
- 2014년도 이후(以後) 입학생: 18학점 수강가능

② 졸업학점 130초과 학과: 21학점 수강가능(토목공학과 2019입학생 포함)

③ 직전학기 평점평균 3.75이상: 3학점까지 초과 수강가능

④ 직전학기(복학생은 재학 마지막 학기) 학과별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3학점이내에서 이월하여 다음 학기 추가신청 가능(2015. 1학기부터 적용)

※ 치의예과 20학점, 치의학과 23학점 수강가능

※ 학군후보생을 위한 교과목은 제한학점 외로 추가로 수강가능

❍ 2019학년도 신입생 수강신청 가능학점

① 졸업학점 130학과 : 18학점 수강가능

② 졸업학점 130학점 초과 학과 : 21학점 수강가능

③ 공학인증 프로그램학과(컴퓨터공학과) : 20학점

학업성적 관리

❑ 성적평가 기준

❍ 성적평가는 매 학기별로 각 교과목을 시험, 과제물 및 출석, 학습태도 등을 포함한 성적평가기준을 강의계획서에 표기함

❍ 학업성적의 상대평가 비율【수업관리 및 학생평가 지침】

- 교양 : A학점 30%이내, B학점 40%이내, C학점 이하 30%이내
- 전공(일반선택) : A학점 35%까지, A+B학점 75%, C학점이하 25%
- 교직 : A학점 40%, A+B 85%, C이하 15%
- 강의 없는 현장실습(임상실습) : A학점 80%, A+B 85%, C이하 15%

※ 제외교과목: 군사학, 강의 없는 현장실습, 수강생 10명 미만인 교과목

❍ 상대평가비율은 동점자 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5%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(단, 추후 성적정정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)

❑ 평점평균 산출

❍ 성적평점평균의 산출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**셋째자리를 절사**하여 처리함

❍ 성적 평점평균이 동점일 경우 평점합계 ➡ 신청학점계 ➡ 성적취득과목수 순으로 순위를 정함

❍ 평점평균의 실점 계산법

▪ 【2015학번이전】 ▫ 일반학생 : (평점×10) + 54
▫ 교직이수학생 : (평점×10) + 52.5
▫ 평점 4.3 ⇨ 98점, 평점 4.4 ⇨ 99점, 평점 4.5 ⇨ 100점

▪ 【2016학번이후】{(취득한 평점평균-0.6)×40/3.9}+60

❍ 계절 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해당학기의 평점평균에 산입하지 않음

❑ 출석 및 성적표

❍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학기 강의가 종료되면 출석부를 정리하여 기한내 입력을 완료하여야 함. 전자출결 미시행 교과목은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

❍ 출석이 매 학기 총 수업시간수의 3/4에 미달한 교과목의 성적은 "F"학점으로 처리함

❍ 수강승인을 받고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"F"학점으로 처리함

❍ **부정출석자**(의뢰자와 대리자 모두)는 해당교과목을 "F"학점으로 처리함

❑ 결석자 처리 및 공결처리

❍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업일수 1/4이상 무단결석자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소속대학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대학장은 소속대학의 무단 결석자를 집계하여 총장에게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❍ 1항1호에 의거 제출한 무단결석자는 질병, 병역 등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학칙 제53조 제6호에 따라 제적처리 하여야 한다.

② 공결처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이 공결허가서(별지 제13호 서식) 또는 공적 증빙서류를 교부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. 다만, 제7호는 공결허가서만 인정한다.<개정 2017.3.8., 개정 2018.6.15.>

1. 병역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소집 된 자
2.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자
3. 정규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자(교육실습, 현장실습, 야외답사)
4. 경조사로 인하여 수업이 불가능한 자(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따름)
5. 『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에 의거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수업이 불가능한 자<신설 2018.6.15.>
6. 본인의 질명으로 응급 진료 및 입원 진료로 수업이 불가능한 자<신설 2018.6.15.>
7.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학장이 인정할 때<개정 2018.6.15.>
   가. 전공 관련 자격시험, 대학원 진학시험, 취업면접으로 수업이 불가능한 자 <신설 2018.6.15.>
   나. 일반 병원 진료로 수업이 불가능한 자. 단, 진료 받는데 소요된 시간에 한하며, 공결로 인정할 경우 담당 교수는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여할 수 있다. <신설 2018.6.15.>
   다.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<신설 2018.6.15.>

③ 취업으로 인한 공결처리는 7학기이상 이수 후 졸업 잔여 학점이 16학점 이하인 학생이"공결허가서"(별지 제13호 서식)를 교부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 공결자는 학사력의 종강일에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재제출하여야 한다.

※ 조기취업자의 공결처리 요건: 7학기 이상 이수, 졸업 잔여학점 16학점 이하, 재직증명서 (4대보험가입확인)

④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 등록된 학생(이하"체육특기자"라 한다)은 수업시간의 1/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결을 허가할 수 있다.

⑤ 체육특기자의 공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구분	수업(공결) 대체	시험대체	비 고
육성종목	대회출전, 훈련기간	대회출전과 시험기간 중복시 인정 *대체인정시 성적 평가(필수) 방법: 추가시험, 과제물 제출 등	주로 단체종목 배구, 야구 등 해당되나, 일부대학(우리대학 포함)은 개인종목 검도, 테니스, 골프 등도 해당
비육성종목	국제대회(올림픽, 아시안게임), 전국체전과 같은 대회 출전		
국가대표	대회출전 및 소집에 따른 훈련 모두 인정		모든 종목 해당

❑ 시험

❍ 시험은 기말시험, 중간시험, 수시시험으로 구분한다.

❍ 기말시험은 각 교과목의 총 수업시간수 3/4이상 출석한 학생만이 응시할 수 있다.

❍ 기말시험의 시험시간표는 강의시간에 준하여 편성하되, 교양 및 교직과목은 교무처에서, 전공과정(계열기초과목 포함)의 교과목은 해당 대학에서 편성하여 시험개시 1주일 전에 공고한다.

❍ 추가시험은 질병, 병역소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이 증빙서를 첨부한 "추가시험신청원"을 제출하여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.

- 질병으로 인한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
- 병역소집의 경우 소집영장 사본
-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는 그 사유를 밝힐 수 있는 증빙서

※ 추가시험은 시험 종료 후 1주 이내에 시행하여야 함

❍ 시험관리

- 시험 중 부정행위가 있을 때 시험감독자는 교무처장에게 동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
-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의 해당교과목 성적은 "F"학점으로 처리함
- 대리시험 행위(의뢰자 및 응시자 포함) 학생은 당해 학기 성적을 모두 "F"학점으로 처리함

❑ 성적평가표 제출

❍ 담당교수는 성적 제출 전에 일정기간동안 교과목의 성적을 수강학생에게 공개하고 성적의 착오, 누락 등이 발생된 경우 정정할 수 있음

❍ 성적 자료의 관리

- 성적평가 근거자료 : 5년간 보관

❑ 성적정정

❍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. 다만, 성적의 착오, 오기가 있는 경우에는

▪ 재학생 : 다음 학기 개시 전까지

▪ 졸업예정자 : 졸업사정 전까지

※ 과목 담당교수의 정정사유서 및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

❍ 총장은 성적정정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정정을 승인함

❍ 성적이 D^0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, F는 낙제로 함

※ 일단 인정된 학점이라도 착오 또는 부정으로 반영된 것은 취소함

❑ 학사경고

❍ 한 학기성적 평점평균이 1.75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 경고를 함(단, 치의학과 제외)

❍ 학사경고 학생의 수강신청 제한 및 제적

- 수강신청 제한

  연속 2회 학사경고 학생은 15학점이하, 연속 3회 학사경고자는 12학점이하로 수강신청학점 제한(2018학번부터 적용, 학사운영규정 제64조)

- 제적

  연속 4회 또는 합산 5회 학사경고시 제적(졸업학기는 미포함, 2018학번부터 적용, 학칙 제53조)

❑ 수료학점

졸업학점 및 수료학점	130학점인 학과(부)	135~144 학점인 학과(부)	치의예과 (75학점)	치의학과 (159학점)
제1학년	32	36	38	39
제2학년	64	72	75	81
제3학년	96	108		119
제4학년	130	140		159